

2014년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

구 분		2013년	2014년
부녀자 공제 적용대상 조정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녀자 공제 적용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가 없는 여성 세대주로서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- (신 설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녀자 공제 적용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가 없는 여성 세대주로서 기본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- 종합소득금액(근로소득금액)이 3천만원이하 일 것 * 총급여액이 41,470,588원 이하인 경우를 말함.
자녀관련 인적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통합전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녀관련 인적공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6세이하 자녀양육비 공제, 출산·입양공제 - 다자녀 추가공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전환(자녀, 입양자 및 위탁아동에 한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녀 1명당 15만원, 2명 초과시 초과 1명당 20만원 * 손자, 손녀, 기초수급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
특별공제항목의 세액공제로 전환	보험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험료 납입액(연 100만원 한도) 소득공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험료 납입액(연 100만원 한도)의 12% 세액공제
	의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의료비로서 공제한도 내 의료비*에 대해 소득공제 * (공제한도) 연 700만원(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자는 공제한도 없음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하는 의료비로서 공제한도 내 의료비*의 15% 세액공제 * (공제한도) 연 700만원(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자는 공제한도 없음)
	교육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제한도 내 교육비 지출액*에 대해 소득공제 * (공제한도) 취학전아동·초·중·고생 : 연 300만원, 대학생 : 연 900만원, 근로자본인·장애인 : 한도 없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제한도 내 교육비 지출액*의 15% 세액공제 * (공제한도) 취학전아동·초·중·고생 : 연 300만원, 대학생 : 연 900만원, 근로자본인·장애인 : 한도 없음
	기부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제한도 내 기부금 지출액*에 대해 소득공제 * (공제한도) 정치자금·법정기부금 : 소득금액, 지정 기부금 : 소득금액의 3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제한도 내 기부금 지출액*의 15%(3천만원 초과분은 25%) 세액공제 * (공제한도) 정치자금·법정기부금 : 소득금액, 지정 기부금 : 소득금액의 30%
주택임차차입금 공제대상 확대	공제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원* *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공제요건을 충족하여야 함.
	공제대상 차입금	(신 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래의 경우에도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인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세계약 연장시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연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시 공제 가능 - 다른 전세주택으로 이주시 종전 공제대상 차입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
	개인간 차입금 이자율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 3.4%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중 이자율 변경 : 3.4% → 2.9%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 2.9%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('14.3.14 이후)
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대상 확대	공제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택 취득당시 무주택 세대일 것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택 취득당시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* *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 추가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공제 허용. 단, 연말 현재 1주택이어야 함.('14년 이후 차입분 부터 적용)
	공제대상 주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* * 국민주택규모의 요건 삭제('14년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) ** '13년 이전차입금의 경우에는 기준시가 3억원을 적용.

구 분	2013년	2014년
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공제요건)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• (공제금액) 당해연도에 납입한 금액의 60%(연 500만원 한도)를 소득공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공제요건)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로서 무주택 세대주(또는 무주택세대원)인 근로자 *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기타 공제요건을 충족하여야 함. • (공제금액) 당해연도에 납입한 금액(연 750만원 한도)에 10%를 세액공제
연금계좌 세액공제로 전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*에 납입한 금액(연 400만원 한도)을 소득공제 * 과학기술인공제회,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(IRP)을 말함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*에 납입한 금액(연 400만원 한도)에 12%를 세액공제 * 과학기술인공제회,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(IRP)을 말함.
개인의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인이 개인투자조합,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- (소득공제율) 투자·출자금액의 30%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인이 개인투자조합,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<u>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경우</u> - (소득공제율) 투자·출자금액의 50%(5천만원 초과분은 30%)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조정 - 신용카드 : 15% - 직불(체크)·선불카드·현금영수증 : 30% - 전통시장 사용분 : 30% - 대중교통 이용분 : 30% • “공제한도 초과금액”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·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금액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 한도내 추가공제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- 신용카드 : 15% - 직불(체크)·선불카드·현금영수증 : 30% - 전통시장 사용분 : 30% - 대중교통 이용분 : 30% - 근로자 본인의 체크카드 등 추가공제율사용분 증가액* : 10% * ‘13년 대비 ‘14년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증가한 경우에 한함. • “공제한도 초과금액”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·대중교통이용분의 공제금액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 한도내 추가공제 적용
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득공제요건 - 매출액 또는 생산량 등이 10% 이상 감소한 경우 -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-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득공제요건 조정 - 상시근로자의 1인당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 -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지 않을 것 -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경우
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신설	(신설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공제요건) '15.12.31 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당해연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 일 것. • (공제금액) 당해연도에 납입한 금액의 40%(연 240만원 한도)
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한도적용대상)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주택자금, 주택마련저축, 우리사주조합출연금, 투자조합출자, 신용카드 등,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한도적용대상) 주택자금, 주택마련저축, 우리사주조합출연금, 투자조합출자(개인의 벤처기업 등 투자분 제외), 신용카드 등, 소기업·소상공인공제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
기부금 이월공제방식 등의 변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부금 이월공제 방식 - 공제 한도내에서 당해연도 지출기부금 → 이월 기부금 순으로 공제 •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 : 3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부금 이월공제 방식 변경 - 공제 한도내에서 이월 기부금 → 당해연도 지출기부금 순으로 공제 •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 연장 : 3년 → 5년

구 분	2013년	2014년
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있는 모든 근로자(중전의 “금액요건” 삭제)
교육비 공제대상 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방과후 수업의 교재비의 범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(학교 등 구입) 도서구입비 및 재료비 -(학교외 구입) 도서구입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방과후 수업의 교재비의 범위에서 재료비를 제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(학교 등 구입) 도서구입비(재료비를 제외) -(학교외 구입) 도서구입비
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세액감면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대상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만 29세 이하 청년 (감면세액)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의 100% 감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대상자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만 29세 이하 청년, 장애인, 만 60세 이상자 (감면세액)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의 50% 감면(단, '13년 이전 취업자의 경우 100% 감면 적용)
외국인 근로자의 과세 특례제도 합리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국인 근로자 17% 단일세율 분리과세 적용 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신설) - (신설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국인 근로자 17% 단일세율 분리과세 적용특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용기업과 특수관계(경영지배관계, 친족관계)에 있는 근로자는 적용배제 - 국내 최초 근무일부터 5년간 적용(단, '13년 이전 근무자는 종전규정에 따라 감면 적용)